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86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주호영·천하람·김은혜

이헌승 · 김소희 · 안상훈

윤상현 · 서명옥 · 강명구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건축 또는설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허용 가능 시설에 실내외 체육시설, 야영장, 도서관 등의 여가 시설은 포함된 반면에 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복지관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나 부지 매입비용의 부담으로 도심 내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개발제한구역에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제한)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	
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	
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	
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	<u>.</u>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의 형질변경

가. ~ 마. (생 략)

<신 설>

1의2. ~ 9. (생 략)

② ~ ⑪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

지 증진을 위한 시설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 ~ ① (현행과 같음)